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錄 第
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26日(月) 午前11時

場所 水資源管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面

(11時 23分 開議)

○委員長 崔鍾根;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第4次 水資源管理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崔鍾根;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本 案件은 지난 12月 20日 우리 委員會 策3次 會議에서 委

員님들의 충분한 檢討와 심도 있는 審査를 위해 保留된 것
입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
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上水道事業本部長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
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致雲;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尊敬하는 崔鍾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年末의 바쁜신
日程에도 불구하고하시고 議政活動을 하시느라고 연일 애쓰시는
委員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서울
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件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
렇게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提出된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은 제가 듣기
로는 그 동안 委員님들께서도 改正의 필요성에 대해서 指摘
해 주셨던 事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給水工事を 申請할
때 需要家の 工事費 負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實際工事費와
定額工事費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建築物이 增築되어서 水道計量器 口徑을
확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給水條例에 의거 增築面積이
165㎡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定額工事費를 적용하고, 增築面
積이 165㎡보다 작은 建物は 實際工事費를 적용하고 있었습
니다. 이렇게 增築面積에 따라 구분 적용하게 된趣旨는 增築
面積이 작은 경우에는 定額工事費 負擔에서 제외시킴으로써
需要家の 負擔을 줄이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 定額工事費는 81년에 策定된 이후 현재까지 13年 동안 그
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增築規模가 작은 建物에 적용하는

實際工事費에 있어서는 人件費, 資材費 등 物價上昇으로 인하여 해마다 上昇됨으로써 오히려 큰 建物보다 작은 建物로 増築하는 경우에 더 많은 工事費가 負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일부 民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理解를 돕기 위해서 建物 増築時 需要家 負擔金에 대해서 13mm를 20mm로 확대하는 경우 5m 基準에 있어서 増築面積이 49坪일 경우에는 工事費가 50萬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定額工事費로 할 경우에 51坪 정도가 増築을 하게 되면 오히려 49坪보다 더 19萬 4,000원이 싼 30萬 6,000원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한 實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市長에 의해서 모든 増築建物에서 工事費 負擔을 定額工事費로 통일해서 施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提出된 內容입니다.

또한 給水條例 第8條第1項의 計劃給水地域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서울市界內的 給水可能한 모든 地域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定額工事費制度가 마치 어느 특수한 計劃地域을 對象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給水區域이라는 用語로 통일시킴으로써 市民들이 쉽게 理解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第10條의 제목 중 用語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定額制工事費를 定額工事費로 用語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第10條의 내용 중 定額工事費와 定額給水工事を 실시하는 地域 및 特定地域은 市長이 決定告示하고 있는데 條例上에는 市長이 告示한다로 規定되어 있어서 이를 市長이 決定告示한다로 用語를 改正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이상 報告드린 바와 같이 일부의 用語整理 등 條例內容을 일부 改正해서 市民들의 理解를 도모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事項입니다. 委員님들의 各별하신 관심으로 本 案件을 處理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鍾根;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奉萬;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理由와 主要骨子 는 本部長님이 말씀 올렸기 때문에 檢討報告書 2페이지 檢討意見을 중심으로 報告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보고중단)

(뒤에 실음)

.....

油印物 5페이지와 같은 實施 告示를 81年 8月 10日 朴英秀 市長이 해서 이 條項은 그대로 施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油印物 6페이지 서울特別市 告示 第65號로 85年 1月 28日 두번째 告示가 있었습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給水工事 定額工事費와 定額給水工事 實施地域을 告示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油印物 7페이지.

.....

(報告繼續)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鍾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炯奎 委員님.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本部長께서 말이죠, 基本的으로 上水道事業本部는 그 收益의 주체가 水道料金에 의한 收入이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돗물을 給水하는 送水管, 配水管, 또는 給水管 이런 管에 대한 問題는 基本的으로 수돗물 값을 받기 위한 上水道事業本部の 물길입니다. 따라서 그 工事に 대한 費用은 需要者가 부담하는 것이 原則적으로 企業會計學的인 立場에서는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問題를 前提하고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실질적으로 給水管에 대한, 또는 送水管, 配水管에 대한 직접적인 工事費를 施設分擔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제적인 立場에서는 서울市民이, 給水 받고 있는 市民이 그 工事費까지도 負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財政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서울市 財政이 어려웠었던 것을 감안해서 지난날에 水道工事費를 市民이 負擔했다고 하는 그 점은 백번 理解를 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있어서 水道工事費에 대한 問題가 市民이 負擔하는 그 工事費,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 工事費를 負擔을 한다고 하면 실제 所要되는 그 工事費를 負擔하는 것

이 서울시 財政을 위해서 市民의 입장에서 양보하여서 負擔한다고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本委員이 몇 가지 質問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改正案에 나오는 第8條第1項에 의한 定額工事費에 대한 내용인데 이 定額工事費라고 하는 基本 實施하는 배경은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定額工事費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定額工事費가 필요하지 않고 기왕에 서울市民이 負擔했었던 上水道施設 전체에 대한 既得權을 새로운 利用者로 하여금 그것을 金額으로 換算해서 받는 그 施設分擔金制度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定額工事費가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定額工事費를 建物 延面積에 의해서 算出해서 定額工事費를 받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건축면적을 基準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큰 建物에서 물을 사용하는 量과 어느 정도의 比例性이 있었기에 建築面積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給水條例施行規則에 의해서 定額工事費 算出內容에 의하면 幹線配管 및 需要家 引入工事に 所要되는 材料費, 勞務費, 道路復舊費, 水道計量器 代金, 一般行政管理費 및 총체적인 手數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定額工事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定額工事費制度를 運營해 왔었던 오늘 이 시점을 되돌아보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 왜 赤字가 나왔겠느냐, 왜 나왔느냐, 최소한도 一般行政管理費 俸給까지 다 計算해서 定額工事費에 算出하는 그런 基準이 되어 있는데 왜 赤字가 되고 왜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分析을 해 봐

도 定額工事費에 水道工事費로 徴收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당성을 上水道事業本部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면이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定額工事費가 建物面積을 基準으로 한 그 問題도 上水道 물 使用量하고 比例的인 그런 입장이 아닌 이상 建築面積을 가지고 基準으로 해서 定額工事費로 받는 것도 부당하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번째로 定額工事費로 徴收하는 그 기본적인 問題는 이 시점에서 부당하다는 얘기고, 설사 定額工事費를 받는다 하더라도 建築面積을 基準으로 한다고 하는 問題는 上水道 使用量과 比例性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水道工事を 할 때 市民이 백보를 양보해서 이것은 水道工事費는 당연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물값을 받기 위한 基本的인 施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財政이 虛弱하니까 市民이 백보를 양보해서 내는 그 工事費는 基本的으로 實際工事費에 該當하는 그 部分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93年 7月 8日 이후에 水資源管理委員會에 왔었습니다만 93年度부터 本委員이 이 問題를 繼續해서 改正해야 된다고 하는 問題를 論議되어 왔었지만 지금 金義在 前 本部長께서 認識을 하고 이제 改正案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上水道事業本部長을 하신 분들은 전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門外漢的으로 公務를 怠慢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에는 이 定額工事費를 廢止를 하고 실제 精算에 의한 工事費 負擔만으로 水道工事を 해서 물을 供給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은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정확한 答辯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計劃給水地域을 削除하고 給水區域이라고 하는 用語를 採擇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計劃給水地域이라고 하는 것은 新設된 대단위 물의 需要量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給水를 하기 위해서 上水道事業本部로서는 豫測된 計算下에서 淨水施設과 그에 따르는 送·配水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長期眼目에 의한 給水計劃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그 給水計劃을 實現에 옮기는 大量의 물 需要量에 대한 그 問題, 그 地域을 무슨 地域이라고 하느냐 하면 計劃給水地域이 아니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施設에 추가적인 施設이 所要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多量의 물 需要가 豫測되는 그것을 없애 버리고 既存 물 需要量이 있는 그 給水地域으로 還元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定額工事費를 받아 가지고도 上水道事業本部가 赤字運營을 하고 있는 이 上水道 內部體制, 事務能力, 經營能力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南北統一이랄지, 또 首都圈의 적극적인 開發이랄지 이런 데 대한 問題가 비록 서울市の 上水道 施設이니까 서울市界內에만 給水하겠다고 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에서 計劃給水地域 用語를 廢止하고 給水地域으로 還元하는 것인지 基本的인 上水道事業本부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南北統一이 된다고 한다면 一山이나 高陽市 地域이 대대적인 住宅開發이 豫想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高陽이나 一山地域이 거기에 給水할 수 있는 水源地가 어디이며, 그와 같은 곳에 물을 供給할 곳이라고는 역시 서울 上水道事業本部 業務의 一環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형편이다 이거예요. 이런 등등을 豫想해서라도 計劃給水地域이라고 하는 用語는 存置해야 하고 必要합니다.

또한 서울市界內에서만 갖는다 하더라도 우선 都市開發公社에서 大單位 住宅宅地開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多量 給水가 豫想되는 地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既得權을 維持해서 기왕에 먹고 있는 서울市民의 水道施設에 대해서 똑같이 새로 需要되는 多量 宅地開發地域에 사는 사람에게 施惠를 준다고 하는, 물론 施惠를 財政形편이 좋으면 주어야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計劃給水地域이라고 하는 것은 必要하다고 봅니다.

또 必要한 理由는 우리가 昨年과 같이 旱害가 있어서 원만히 上水道事業本部의 努力에 의해서 잘 給水가 되었었습니다만 軍事的인 理由, 또는 旱害의 理由 등등의 그런 理由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도 停電이 되어서 못 나간다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地域은 물을 주어야 되고, 어느 地域은 물을 조금 주어야 되고, 이런 地域이 不可不 일어날 수 있다고 豫想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給水問題를 안이한 給水區域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는 計劃給水地域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計劃給水地域 用語의 解釋上 差異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計劃給水地域 用語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그것이 바로 定額工事費와 連繫되는 그런 立場의 計劃給水地域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部分的으로 改正을 원하고 있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鍾根; 吳基昌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吳基昌 委員; 吳基昌 委員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質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增築工事に 있어서 工事料金を 實際工事費와 定額工事費로 二元化되어 市民負擔이 加重되어 있는 바 改善方案이 많이 檢討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公債 買入에 있어서 基準設定을 어떻게 適用하고 있으며, 本 條例改正에 있어서 市民에게 이익을 주는 方案이 많이 檢討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給水條例 第10條에 의하면 定額工事費 및 實施地域을 告示하도록 되어 있는데 給水條例改正 이전에 計劃給水地域 告示事例 및 關聯 工事費 徵收實績을 說明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鍾根; 다음 具齊南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具齊南 委員;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定額工事費, 또 實際工事費 이렇게 分類해서 二元化된 工事費를 適用해 왔는데 나름대로 定額工事費를 導入해서 施行할 때에 그 長·短點을 알고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定額工事費가 적은 坪數와 比率이 또는 公平均치 못한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그 나타난 것이 아마도 7·8년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동안에 이 部分을 修正補完하지 못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定額工事費를 物價上昇率에 따라서 왜 調整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더 일찍이 調整을 해서 서울市民을 위한 行政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 公務員들이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斷面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問題는 충분히 研究檢討해서 補完되는, 非合理的인 部分을 調整을 하고 해서 矛盾을 줄여서 아주 合理的인 最善의 條例를 制定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鍾根; 다음 金錫判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金錫判 委員; 金錫判 委員입니다.

제 質問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常任委 會議 때 本 給水條例案은 근본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再檢討 要求할 必要가 있다 해서 다음 會期에 處理기로 동의해 가지고 滿場一致로 可決되었던 그런 案件이었습니다.

그런데 今年度 마지막 會期 때 긴급히 議事日程을 다시 정해서 오늘 上程해 가지고 꼭 通過해야 되는 緊急한 어떤 事項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擔當 實務者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市民과 직접적인 큰 負擔과는 關係가 없다, 또 歲入·歲出과 큰 關係가 없다 이렇게 說明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일응 수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市民과 큰 關係가 있다고 그러면 前者의 여러 委員께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本 給水條例가 81年度 制定해 가지고 13·4년이 지났는데 긴급히 今年度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實務者는 지난 行政事務監査에서 지적된 事項이니까 今年內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上級機關으로부터 指摘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執行部에서는 條例改正案을 우리 議會에 提出했으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任務를 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議會 運營規則上, 또 地方自治法 第60條랄지 동일 會期內에 否決된 案件은 그 會期 內에 다시 上程치 못한다는 規制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保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만 일단은 이 法規를 準用해서 解釋할 必要가 있다. 우리 委員會에서 동일 委員들이 檢討를 더해서 다음 會期에 하기로 條件附를 달아가지고 處理를 한 案件인데 이 條件附가 充足되지 않은 狀況에서 오늘 긴급히 꼭 通過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說得이 안 됩니다. 이 점에 執行部로서의 어떤 隘路事項이 있으면 이 점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委員들 長時間 동안 論難을 거듭했습니다만 대부분의 委員이 給水條例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서 冬節期에는 市民負擔이 간다손 치더라도 별 크게 負擔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明年 2월에 손질을 해도 市民負擔과는 직결되는 事項이 아니다, 우리한테 弘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는 理由 中에 施設分擔金입니다. 이것을 本委員 생각같아서는 上水道基礎施設分擔金이라고 하면 市民들이 理解가 한결 부드러울 것입니다. 좀 用語는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字句 修正으로서 소위 서울市에서 受益者들에게 너무 봉을 씌운다 하는 그런 감을 지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을 손질을 해서 전체적으로 明年 2월에 하

면 되는데, 그러니까 全體 要約해서 말씀드리면 今年 年內에 꼭 改正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本部長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鍾根; 林東奎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林東奎 委員; 林東奎 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여러 차례 指摘을 했던 事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한번 定額工事費하고 實施工事費가 問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既存住宅이죠, 이것을 增築하거나 既存住宅에 한해서 작은 住宅의 피해를 줄인다는 次元에서 定額工事費로 條例를 改正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작은 住宅은 庶民이 많이 사니까 庶民에게는 負擔을 줄이고 또 큰 住宅은 여유가 있는 분이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실지 들어가는 돈을 받겠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서 한 14年間 죽 해 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物價가 上昇했고, 여러 가지 問題들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庶民에게 損害가 나니까 條例를 바꿔야 되겠다, 이 原則的인데 대해서는 本委員은 贊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지금 地域의 既存住宅에 나가 보면 대개 13mm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전에는 建築을 新築할 때에 水道管을 어떤 强制性을 띠지 않았어요. 그런데 昨年부터인가는 建坪에 따라서 20mm, 25mm 죽 強制規定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작 80年代 初부터도 했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既存住宅이 13mm로 되어 있는 地域에서 民願이 거의 發生을 합니다.

이것은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고, 뭐 이런 問題가 나오는데 이것을 갈려고 나가 보면 水道事業所에서 20mm로 안 갈아주려고 해요. 25mm로만 갈아주려고 해요. 실지 그 집이 50坪이 안 됩니다, 우리 地域에도 나가 보면. 그래서 그 理由가

뭐냐, 왜 20mm로 안 갈아주고 25mm로 갈아주려고 하는 理由가 뭐냐,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을 定額工事費 이런 쪽의 條例에 손을 댈 때에 本委員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計量器 값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納品 받는 것하고 또 실지 工事해 주는 것하고 差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면에서 既存住宅에 물이 안 나오는 데 實費로 할 수 있는 工事を 줄일 수 있는 方法은 없느냐. 지금 예를 들면 한 3m 정도 대개 담 밑에 水道計量器가 있습니다만 本線에서 한 3m에서 5m 이내면 거의가 水道計量器가 닿는데 13mm에서 25mm로 하려면 工事費가 한 114萬원돈 들어갑니다. 상당히 負擔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研究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상당히 제가 上水道事業本部도 그렇고 水道事業所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檢討해 볼 意思는 없으신지 本部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定額工事費 實施地域을 市長이 告示를 한다 그랬는데 決定이라는 文案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決定告示한다. 그런데 꼭 決定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그만큼 市長한테 權限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지, 行政府에서 執行을 강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決定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議會가 생기기 전이니까, 오히려 議會의 權限이 앞으로는 확대되는 측면에서 市長이 決定해서 議會의 承認을 받아서 告示한다든지 이런 方法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鍾根; 本部長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深度 있고

진술한 가운데 質疑에 임해주셨습니다. 성의 있는 答辯과 所
信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 停會를 宣布하게 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6分 會議中止)

(13時 54分 繼續開議)

○委員長 崔鍾根;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
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上水道事業本部長 答辯은 書面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
例案에 대한 다른 특별한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코
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金錫判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崔鍾根; 말씀하세요.

○金錫判 委員; 지금 우리 午前에 質疑事項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이 指摘되었습니다만 書面答辯으로 인해서 충분한 答
辯을 듣고 그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다음 會期로 보류되어서 給水條例 전
체를 좀더 深度 있게 우리 委員과 執行部가 공동으로 노력해

서 改正할 필요가 있다고 거의 委員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執行部에서도 本 案件을 撤回을 하시든가, 아니면 議會와 공동으로 修正案을 내서 다음 2월 會期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保留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崔鍾根; 動議에 再請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방금 金錫判 委員으로부터 本 案件을 保留하자는 動議를 해주셨습니다. 具齊南 委員 再請에 의해서 本 案件은 動議로 成立되었으므로 保留하자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具齊南 委員; 保留를 하는데 아까 우리 金錫判 同僚委員께서 말씀했듯이 충분히 條例 전체를 檢討를 해야 할 期間도 필요하겠고, 특히 冬節期에는 工事が 없는고로 市民의 어떤 民願은 없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期間內에 손질을 해서 條例案 전체를 손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몇 분이 小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執行부와 같이 協議를 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添附합니다.

○委員長 崔鍾根; 잘 알았습니다

다음 懇談會를 우리가 소집해서 그것은 委員님들의 意見을 收斂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市民들에게 不便을 주는 條例라면 조속히 條例를 改正해서 市民들 便宜主義 行政을 펼치는 것이 우리 委員의 도리라 생각해서 저로서는 緊急會議를 소집했던 바이나 委員님들 뜻이 그러하므로 本 案件은 保留하자는데 異議가 전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된 議政活動에 參與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千百萬 市民을 위해 열심히 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내간에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 定期會 水資源管理委員會 第4次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58分 散會)

○出席委員

崔鍾根 金錫判 具齊南

朴仁浩 沈揆辰 吳基昌

劉起鍾 林東奎 張汶龜

趙文晋 金炯奎

○專門委員

張奉萬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 金致雲